

##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1년 1월 21일  
국무조정실장

### 1. 선발예정인원 (1개 직위, 총 1명)

채용분야	인원	직급	채용기간	근무예정부서
시민사회 소통·협력	1명	전문임기제 나급 (5급 상당)	임용일~ '22.5.31.	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시민사회비서관실 (서울특별시)

※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,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

### 2. 주요직무내용

채용분야	주요 담당업무
시민사회 소통·협력	○ 시민사회 정책제안 및 개선과제 발굴·처리 ○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운영 등 시민사회 소통·협력 활성화 ○ 시민사회와 네트워킹 등 소통·협력 체계 및 각종 이슈 등 현안 관리

### 3. 근거법령

- 국가공무원법(법률 제16905호, 2020. 1. 29.)
- 공무원임용령(대통령령 제31042호, 2020. 9. 22.)
- 공무원임용시험령(대통령령 제31046호, 2020. 9. 22.)
- 공무원임용규칙(인사혁신처예규 제101호, 2020. 9. 22.)
-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(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, 2020. 10. 21.)

## 4. 채용자격요건 (기준 :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)

### ① 공통요건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부칙 제2조(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)】

제33조제6호의3·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·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## 【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)】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6.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 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1. 12. 31. 이전 출생한 자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)

② 응시자격요건 : **[별지 1호] 직무기술서(응시자격요건) 참조**

응시 자격 요건	
경력	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(민간경력만)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(민간경력만)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(공무원경력만)  <b>[관련 경력]</b> 행정기관, 공공기관(국회·정당 등 포함),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소통·대외협력 또는 정책·제도 관련 근무경력

○ 기본사항

- 분야별로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**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**하며, **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**해 응시해야 함
- **응시자격요건**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, 학위 등은 **최종 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**으로 판단함
- **'경력'요건으로 응시**하는 경우, **최종 관련경력을 기준**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**퇴직 후 3년**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○ 경 력

- '경력'은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, **경력증명서 제출 전에 한해 인정**
- \* 경력증명서상에 **근무기간(연월일)·상근여부·담당업무가 명시**되어 있어야 하며,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
-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,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
- \*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- **경력요건으로 응시**한 경우, **공무원경력**과 **민간경력**을 구분하여 인정

### ③ 우대요건 : [\[별지 1호\] 직무기술서\(우대요건\) 참조](#)

#### 우대요건

-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 
(연차별 차등 우대, 응시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제외)
- 정부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직무분야와 관련된 수상실적  
(개인성명이 기재된 상훈일 경우에만 인정, 단체 제외 / 건수별 차등 우대)

#### ○ 기본사항

-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

#### ○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경력

- 응시자격요건으로 지정된 관련 경력을 충족한 이후 초과한 관련 경력만 우대요건으로 인정

#### ○ 수상실적

- 수상실적은 직무분야와 관련되어야 함

## 5. 보수수준

-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
  - 규정상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업무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채용직급	연봉 상한액	연봉 하한액
전문임기제 나급	76,686천원	51,098천원

## 6. 시험방법

### ①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로 결정

※ 서류심사 기준 : 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, 관련분야 근무경력·수상실적 등

## ② 2차시험 : 면접시험

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
※ (평정요소)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·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

※ (최종합격자 결정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"하"로 평정 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, "상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

## 7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1.1.21.(목)~'21.2.1.(월)	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,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
원서접수	'21.1.25.(월)~'21.2.1.(월)	■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(우편, 방문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1.2.25.(목)	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면접심사	'21.3.4.(목)	■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
최종합격자 발표	'21.3.12.(금)	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
※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추세, 응시인원,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(<http://www.opm.go.kr>)의 알림마당·공지사항에 게시

## 8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'21. 1. 25.(월) ~ '21. 2. 1.(월), 09:00~18:00
  - ※ 접수번호(응시번호)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
-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
  - ※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**09:00 ~ 18:00(12:00 ~ 13:00 제외)** 내에만 가능하나, **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하여 방문접수 지양**
  -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, 봉투 겉면에 "응시분야 및 직급" 기재
  - ※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- 접수처 : 국무조정실 인사과
  - (주 소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 
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인사과 채용담당자
  - (우편번호) 30107
- 응시표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

## 9. 제출서류

※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

### < 공통사항 : 필수 제출 >

- ① 응시원서 1부 <별지 2호 서식>
  - ※ 정부수입인지(전문임기제 나급 : 10,000원) 첨부,
  - ※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
- ② 이력서 1부 <별지 3호 서식>
  - ※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,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
- ③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4호 서식>
  - ※ A4 2매 내외(형식·구성 자유)

- ④ 직무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1부 <별지 5호 서식>  
 ※ A4 5매 내외, '요약서'는 A4 1매로 작성
-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<별지 6호 서식>
- ⑥ 개인정보 제공(이용) 동의서 <별지 7호 서식>

< 개별사항 : 해당자만 제출 >

-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<별지 8호 서식>  
 ※ **재직기간(연월일), 인사 변동사항, 직위, 담당업무, 상근여부** 등 등 반드시 기재  
 - 비상근 근무시 **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** (예: 주당 30시간)  
 - **담당업무 미기재시 관련분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**  
 ※ **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**(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)
- ②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
 ※ 학위·연구논문은 A4 1매 이내의 별도 논문요약서 첨부 <별지 9호 서식>  
 ※ 논문의 표지·목차, 서론 사본 각 1부(논문명, 지도교수명, 학위자명 등 명시)  
 ※ 심사위원 제척·기피,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,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공개되지 않음
- ③ 직무분야 관련 수상(표창 등) 증빙자료 사본 1부  
 ※ 정부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수상(표창 등)
-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
 (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, 외국인 제출 불필요)

## 10. 유의사항
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·학위·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,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**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**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[www.mpm.go.kr](http://www.mpm.go.kr)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
- 제출서류 미비,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청구서(별지서식 10호)를 작성하여 이메일 ([opminsa@korea.kr](mailto:opminsa@korea.kr))로 제출하시면 원본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.  
※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: '21.2.26.(금)~'21.3.3.(수)
-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업무를 수행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서류심사 합격자의 경우 4대 보험(고용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·산재보험)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,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경력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, 공무원채용신체검사,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.
-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,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

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-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